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3
----------	-----

제출년월일 : 202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매년 증가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도  
요금을 3년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함.

\* 2022년 전국 평균 현실화율 72.8%(우리군 22.1%).

\*\* 2027년(목표년) 우리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39.7%.

\*\*\* 2023년 영업손익 -127억원, 최근 5년 영업손익 -518억원.

## 2. 주요내용(안 제23조 제1항 별표 1)

가.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업종별 누진제 단계를 조정하고

나. 영업손실 개선을 위해 수도 요금을 3년간(2025년부터 2027년)  
매년 25%씩 인상하고자 함.

가. 누진제 개편	나. 상수도 요금 조정
1) 가정용(6단계 ⇒ 3단계) 축소	1) 2025년 25% 인상(모든 업종)
2) 일반용(4단계 ⇒ 3단계) 축소	2) 2026년 25% 인상(모든 업종)
3) 욕탕용(4단계 ⇒ 1단계) 축소	3) 2027년 25% 인상(모든 업종)
4) 산업용(1단계 ⇒ 1단계) 동일	

※ 누진제 :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 적용.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4.8.29. ~ 2024.9.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4-4호, 상하수도사업소-14264(2024.8.28.)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3385(2024.8.26.)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3385(2024.8.26.)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7353(2024.8.27.)호]
-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예산과-4593(2024.9.20.)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4934(2024.9.26.)호)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도사용료 요율표

업종 \ 요율	사용량(톤)	사용요금(원)			비 고
		2025년	2026년	2027년	
가정용	0~10	610	760	950	
	11~30	1,160	1,460	1,830	
	31 이상	2,100	2,630	3,290	
일반용	0~50	1,630	2,040	2,550	
	51~300	2,960	3,710	4,630	
	301 이상	3,780	4,730	5,910	
욕탕용	톤당	2,740	3,430	4,290	
산업용	톤당	1,860	2,330	2,910	

[별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제23조 수도사용료 요율표				[별표 1] 수도사용료 요율표					
요율 업종	사용량 (톤)	사용 요금 (원)	비고	요율 업종	사용량 (톤)	사용요금(원)			비고
						2025년	2026년	2027년	
가정용	0~10	490		가정용	0~10	610	760	950	
	11~20	880			11~30	1,160	1,460	1,830	
	21~30	1,100			31 이상	2,100	2,630	3,290	
	31~40	1,300		일반용	0~50	1,630	2,040	2,550	
	41~50	1,340			51~300	2,960	3,710	4,630	
	51 이상	2,030			301 이상	3,780	4,730	5,910	
일반용	0~50	1,300		옥탕용	톤당	2,740	3,430	4,290	
	51~100	2,070							
	101~300	2,610							
	301 이상	3,020							
옥탕용	0~200	1,880		산업용	톤당	1,860	2,330	2,910	
	201~300	2,460							
	301~500	2,910							
	501 이상	3,930							
산업용	톤당	1,490							

# 관계법령 발취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92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 6.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 6. 19.,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수 도 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3. 12. 30., 2019. 11. 26.>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2023.11.24 조례 제2892호

제23조(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별표2의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정액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연락처	(033) 330 - 2363